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462호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1일

발 의 자 : 최 재 란 의원

찬 성 자 : 이인락, 심광식, 정순희, 오진환, 이재식 의원 (5 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등 13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있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1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28조, 제2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0. . . ~ 2020.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 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취약계층근로자”를 “취약계층노동자”로,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약계층노동자”란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제1호 중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노동자의 노동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법률”을 “노동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약계층근로자”는 “취약계

층노동자”로 한다.

제6조 중 “근로를”을 “노동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형태”를 “노동형태”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근로환경”을 각각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같은 조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11조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문화”를 “노동문화”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하는”을 “노동을 하는”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야외근로자”를 “야외노동자”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

를 “노동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옥외 근로자”를 “옥외 노동자”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